

채권 재양도 예정 통지서

비케이자산관리대부(주)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시 채권의 권리를 2025년 10월 13일자로 BNK캐피탈(주)에 재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 채권양도에 따라 대상채권의 모든 원금, 이자, 비용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BNK캐피탈(주)에게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아울러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금융위원회 고시 「신용정보업 감독 규정」에 따라 비케이자산관리대부(주)는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BNK캐피탈(주)에게 이전·제공할 예정이며, BNK캐피탈(주)는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양도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관리·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또한, 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케이자산관리대부(주)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(단, 동법 제35조 제1항 제1호~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.)

채무조정 요청의 절차·방법은 비케이자산관리대부(주)(www.bkasset.co.kr)의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본 통지서 도달 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아래 표시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■ 양도예정채권 명세

(자산확정일 기준일 : 2025.06.15)

No	성명	양수회사	원채권사	생년	성별	최초대출원금	원금잔액	기타비용	소멸시효 완성여부	장래이자 면제여부
1	김*구	BNK캐피탈(주)	BNK캐피탈(주)	1991	남	13,500,000	13,313,425	12,919	N	Y
2	김*주	BNK캐피탈(주)	BNK캐피탈(주)	1970	여	23,000,000	21,909,345	-	N	Y
3	김*국	BNK캐피탈(주)	BNK캐피탈(주)	1985	남	15,000,000	14,862,426	-	N	Y
4	김*로	BNK캐피탈(주)	BNK캐피탈(주)	1989	남	15,000,000	8,692,718	-	N	Y
5	유*오	BNK캐피탈(주)	BNK캐피탈(주)	1993	남	29,000,000	19,677,646	60,777	N	Y
6	이*훈	BNK캐피탈(주)	BNK캐피탈(주)	1977	남	25,000,000	22,588,539	-	N	Y
7	김*일	BNK캐피탈(주)	BNK캐피탈(주)	1976	남	10,000,000	6,938,528	32,300	N	Y
8	김*일	BNK캐피탈(주)	BNK캐피탈(주)	1976	남	43,500,000	40,557,796	276,164	N	N
9	송*식	BNK캐피탈(주)	BNK캐피탈(주)	1982	남	11,000,000	8,012,757	-	N	Y
10	송*식	BNK캐피탈(주)	BNK캐피탈(주)	1982	남	39,500,000	21,066,676	-	N	N
11	박*배	BNK캐피탈(주)	BNK캐피탈(주)	1976	남	40,000,000	30,014,734	-	N	N
12	박*배	BNK캐피탈(주)	BNK캐피탈(주)	1976	남	14,000,000	13,161,860	-	N	Y
13	박*배	BNK캐피탈(주)	BNK캐피탈(주)	1976	남	20,000,000	19,341,804	-	N	Y
14	박*배	BNK캐피탈(주)	BNK캐피탈(주)	1976	남	15,000,000	14,238,764	-	N	Y

- 이자, 법적절차비용 등 채권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우편물 일괄발송에 따라 회생채무자, 파산채무자 및 면책자에게도 본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으나, 본 통지서는 이미 내려진 회생, 파산 및 면책 관련 결정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.
- 상기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,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.

■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· 채무조정 요청권

- (개요)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- (신청방법)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,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당사 지점 또는 당사 콜센터(☎02-6092-0001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참고 : 채무조정 절차>



※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·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· 법원의 개인회생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· 법원의 개인파산 · 면책

-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